

#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

유 길 상\*\*

실업급여는 한국에서도 재취업률을 낮추어 실업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비수급자의 경우 모두 본인의 지속적인 구직활동노력이 재취업을 앞당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취업알선횟수와 취업제의횟수가 많을수록 재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취업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본 논문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는데,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직장만족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측정된 재취업의 질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 후 재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계층, 저학력자, 중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이직 당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취약계층들이 실업으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핵심주제어: 실업급여, 실업기간, 재취업의 질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6

## I. 서 론

1995년 7월 1일부터 한국은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for the unemployed)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 매우 유익한 코멘트를 해 주신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02) 785-1801, E-mail: ksyu@kli.re.kr  
논문투고일: 2004. 4. 2 수정일: 2004. 5. 2 게재확정일: 2004. 5. 7

실업급여 금액만큼 수급자의 실업비용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노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Atkinson and Micklewright, 1991; Decker, 1997).

이와 같이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보장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실직자의 재취업노력 약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고용보험(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 실업급여의 기능을 내실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요건,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수준, 실업급여의 제한사유 등을 매우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실제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적 요소에 의하여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실업급여제도는 제II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짧게 하여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제도설계 당시부터 세심한 배려를 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과정에서 재취업알선을 위한 인프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재취업알선서비스가 미흡한 편이므로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기간을 길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지난 2주간의 적극적 구직활동노력을 입증하고 필요한 재취업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실업자도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어 취업알선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재취업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만일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재취업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논문은 한국에서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및 재취업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업급여 발전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한국의 실업급여 구조

한국의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대별된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핵심적 제도로서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있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이 되었을 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sup>1)</sup> 그러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실업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발적 실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 구직급여를 제한한 후 다시 소정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은 자발적 실업자에 의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직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주마다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진로지도 서비스, 직업훈련 소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4주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구직급여의 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90%이며,<sup>2)</sup>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3만 5,000원이다.<sup>3)</sup>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00년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실제 임금대체율(wage replacement rate)은 43.5%였다(유길상 외, 2003: 28).

구직급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sup>4)</sup>

- 1) 구직급여 신청자격은 제도도입 당시에는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기간이 12월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신규 적용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1998년 3월 1일부터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각각 12월과 6월로 완화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각각 18월과 180일로 완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제도도입 당시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최저임금일액의 70%로 설정되었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상향조정되었다.
- 3)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제도도입 당시에는 3만 5,000원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의 임금하락을 반영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3만 원으로 인하되었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3만 5,000원으로 환원되었다.

〈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현황

연 령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주: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잔여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이 일시불로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50조,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2).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 이외에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고용보험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64조).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직장에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 광역에 걸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고용보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 이주비는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

4)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방식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난이도와 고용보험기금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이나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등이며, 후자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그리스 등이다.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초기에는 전자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유길상·홍성호, 1999: 10~11). 한국은 고용보험제도를 입안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 후자를 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차등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유길상·이철수, 1996: 176~177). 제도시행 당시에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30~210일이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60~210일로 조정되었고, 2000년 1월 1일부터 90~240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고실업시기에는 모든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60일 연장해 주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시행되었다.

53조 및 시행령 제66조).

구직급여는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각각 94.2%와 92.8%를 차지하는 실업급여의 핵심으로서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하며,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부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III. 선행연구

실업급여는 실업의 비용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노력의 강도를 낮추거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수준을 높이고, 이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제의(wage offer)를 받아들일 확률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업기간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Feldstein, 1973; Ehrenberg and Smith, 1988). 즉,

실업급여 지급→의중임금수준 상향조정→실업기간 증가→실업률 증가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은 구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구직성과를 높일 수 있고,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한 실업인정과정에서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실업인정과정에서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적극적 취업알선  
→구직효과 향상→실업기간 단축→실업률 감소

이와 같이 실업급여가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Burgess and Kingston(1981), Moffit and Nicholson(1983), Mortensen(1977), Lancaster and Nickell(1980), Moffit(1985), Katz and Meyer(1990) 등의 실증분석은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는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이 한국과 같이 5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이다. 류기철(1999), 황덕순(2000), 유길상 외(2003)의 연구는 한국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홍성우·양채열(1999)은 광주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1998년 11월 말에 실시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Haber and Murray(1966)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적성, 경력, 기술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적성과 기술수준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고,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실업인정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해 줄 경우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에서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적 주장에 대해서는 오직 약한 증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Decker, 1997). 황덕순(2000)과 유길상 외(2003)는 빈도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직 후 재취업한 곳에서의 임금이 이직 전에 비하여 하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길상 외(2003)는 일단 재취업이 되면 다시 실업이 되는 비율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직장만족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황덕순(2000)과 유길상 외(2003)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 IV.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시기의 노동시장 상황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1년에 실시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로 칭함).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는 2000년 4~6월의 기간중에 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한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 1,002명과, 이직 전 18월의 기간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기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비수급자 1,010명을 대상으로, 200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 9월과 10월 동안 조사되었다. 추적조사를 위한 표본은 고용보험 DB에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되었으며, 지역별·성별 비례할당방식으로 표본이 추출되어 조사되었다. 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선정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한국노동연구원, 2001). 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선정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는 고용보험 DB에 누락된 다양한 정보를 추적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본 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두 집단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이직에 대한 준비 없이 이직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자발적 이직자가 대부분인 비수급자는 이직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본 자료를 통한 분석만으로 두 집단의 실업기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로는 보다 정교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자료의 주요 변수들에 관한 기본정보는 <표 2>와 같다.

## 2. 분석대상 시기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

본 논문은 2000년 2/4분기 이직자가 이직 후 2001년 8월 말까지의 구직활동 및 취업상황에 대해 추적조사를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sup>5)</sup> 분석대상 시기의 노동시장 상황은 이직자의 구직활동

5) 본 연구에서 2000년 2/4분기 이직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

〈표 2〉 분석자료의 주요 변수에 관한 기본정보

	수급자(n=1,002)		비수급자(n=1,01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 비중(%)	60.8		51.6	
남성 비중(%)	62.8		62.8	
이직 전 재취업준비자 비중(%)	10.0		26.4	
재취업 경험 있는 자 비중(%)	50.8		75.8	
학력분포(%)				
중졸 이하	20.3		16.5	
고졸	38.6		46.6	
전문대졸	11.1		12.5	
대졸 이상	30.0		24.5	
사업장규모 분포(%)				
30인 미만	46.9		56.5	
30~99인	20.4		9.4	
100~299인	13.3		8.6	
300~999인	11.1		20.7	
1,000인 이상	8.2		4.8	
지속적 구직활동한 자 비중(%)	66.8		67.9	
가구소득분포(%)				
없음	15.2		7.9	
50만 원 미만	6.9		3.4	
50~100만 원 미만	23.4		20.3	
100~200만 원 미만	40.1		42.5	
200만 원 이상	14.4		25.9	
배우자 수입 있는 자 비중(%)	77.2		60.4	
부양가족 있는 자 비중(%)	91.4		89.1	
퇴직금 수령한 자 비중(%)	68.6		37.8	
정규직 비중(%)	86.1		75.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42.2	11.8	36.1	11.0
이직 전 임금(로그)	4.8	0.5	4.6	0.5
월평균 취업제외횟수(회)	0.2	0.5	0.4	1.7
월평균 취업알선횟수(회)	0.1	0.3	—	—
부양가족수(명)	2.6	1.4	2.6	1.5
재취업 후 소득(로그)	4.7	0.6	4.7	0.5
재취업 후 직장만족도(점/45)	27.7	5.6	28.1	5.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1).

며, 단지 활용가능한 자료가 2000년 2/4분기 이직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자료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표 3〉 주요 노동시장지표 추이

(단위: %)

연 도	GDP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
1997	5.0	62.5	2.6	54.1
1998	-6.7	60.6	7.0	53.0
1999	10.9	60.6	6.3	48.3
2000	9.3	61.0	4.1	47.6
2001	3.1	61.3	3.8	48.7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재취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시기의 노동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8년에 GDP성장률이 -6.7%를 기록하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기록하면서, 실업률도 1999년의 2.6%에서 1998년에는 7.0%로 급증하였고 1999년 2월에는 8.6%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의 결과 1999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률도 1999년에는 6.3%, 2000년에는 4.1%, 2001년에는 3.8%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회복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과 2001년에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 다소 미달한 상태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으로 측정된 고용안정성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상태가 2000년과 2001년에 지속되었다.

이처럼 2000년 2/4분기 이직자들이 직면했던 2000년과 2001년의 노동시장상황은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시점이었으나, 외환위기의 여진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었던 시기로서 재취업의 여건이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

## V. 실업급여가 재취업기간과 재취업률에 미치는 효과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기간의 경과에 따른 재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4〉 및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재취업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표 4〉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업기간 경과에 따른 재취업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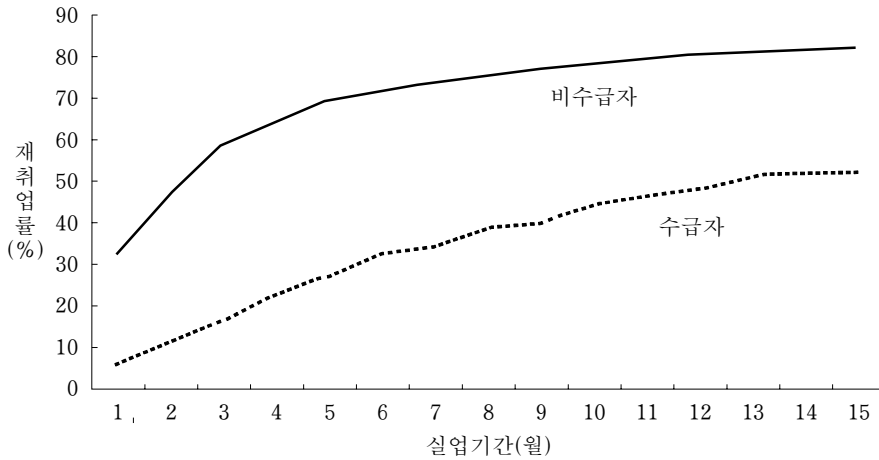
실업기간(월)	수 급 자			비수급자		
	취업자	실직자	재취업률	취업자	실직자	재취업률
1	53	1,002	5.3	319	1,012	31.5
2	57	949	11.3	106	693	46.8
3	46	892	16.3	69	587	58.6
4	52	846	22.6	27	518	63.8
5	35	794	27.0	26	491	69.1
6	43	759	32.7	14	465	72.1
7	10	716	34.1	8	451	73.9
8	30	706	38.3	6	443	75.3
9	14	676	40.4	5	437	76.4
10	25	662	44.2	5	432	77.6
11	10	637	45.8	6	427	79.0
12	15	627	48.2	6	421	80.4
13	17	612	51.0	3	415	81.1
14	5	595	51.8	2	412	81.6
15	4	590	52.5	1	410	81.8
평균실업기간	5.51월			2.45월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1).

등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일에 종사하게 된 일체의 경우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이직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평균 43일이 지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2003), 실업급여 신청 후 첫 2주간의 대기기간과 대기기간 경과 후 다시 2주일이 지나야 실업급여가 최초로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직 후 2달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 4〉를 해석하여야 한다.

〈표 4〉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전체 실업기간에 걸쳐 비수급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빨리 재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취업률의 차이는 평균실업기간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atz and Meyer(1990)는 미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할 시점을 전후하여 재취업률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



〈그림 1〉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업기간 경과에 따른 재취업률

견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소진한 후 1개월 후에 재취업률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 2002).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실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여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한 직후에 재취업률이 급상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한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 이외에도 어떠한 변수들이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황덕순(2000)과 유길상 외(2003)는 한국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실업기간이 길다는 것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산업과 직종변수들을 제외하고,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지속적 구직활동 여부’ 변수와 ‘월평균 취업알선횟수’ 변수를 추가하여 실업급여가 재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해azard)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표 5〉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연령이 많을수록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또한 이직 후 지속적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월평균

취업제의를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본인 스스로 지속적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여 취업제의를 많이 받는 것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실업기간을 단축시키는 첩경임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sup>6)</sup> 그러나 학력, 사업규모와 근속기간, 배우자 수입 유무, 부양가족 유무 등은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재취업률을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해 별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재취업률이 낮고 연령이 많을수록 재취업률이 낮는데,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성과 연령이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후 지속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직 전 재취업 준비는 비수급자의 경우에만 재취업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취업알선횟수<sup>7)</sup>와 취업제의횟수는 재취업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 이직 전의 임금, 사업규모, 근속기간, 배우자 수입 유무, 부양가족 유무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길상 외(2003)에서는 배우자 수입은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논문에서 ‘취업알선 여부’ 변수를 ‘월평균 취업알선횟수’로, 그리고 ‘취업제의 경험’ 변수를 ‘월평균 취업제의를 횟수’로 조정하는 등 종속변수를 재조정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길상 외(2003)에서는 ‘취업알선 경험’이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논문에서 ‘월평균 취업알선횟수’로 변경하여 분석한 결과 월평균 취업알선횟수는 재취업률을 높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실업급여는 한국에서도 재취업 가능성을 낮추어 실

6) 가구소득, 배우자 수입, 실업급여는 모두 유사한 성격의 ‘소득’이지만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가구소득은 실업급여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수입은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실업인정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알선을 받게 되는 수급자와는 달리 비수급자는 대부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비수급자 중 취업알선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는 한 명도 없었음.

<표 5> 재취업률에 관한 해자드 분석결과

	전 체		수 급 자		비수급자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실업급여 수급	-0.8746***	0.0669				
여성	-0.2348***	0.0856	-0.6518***	0.1522	-0.0257	0.1044
연령	-0.0136***	0.0040	-0.0185***	0.0061	-0.0075	0.0053
이직 전 임금(로그)	-0.1576	0.0708	-0.1186	0.1097	-0.1419	0.0924
사업장규모(30인 미만)						
30~99인	0.0703	0.0743	0.1022	0.1216	0.0746	0.0960
100~299인	-0.0996	0.0908	-0.0414	0.1493	-0.0358	0.1165
300~999인	0.0210	0.1088	-0.0016	0.1755	0.0692	0.1448
1,000인 이상	0.0780	0.1003	0.0114	0.1621	0.1451	0.1304
근속기간(월)	0.0000	0.0006	0.0008	0.0007	-0.0002	0.0010
지속적 구직활동	1.5264***	0.0834	1.3207***	0.1404	1.4708***	0.1053
이직 전 재취업 준비	0.4939***	0.0688	0.1079	0.1355	0.6166***	0.0851
배우자 수입(있음)	-0.0368	0.0789	-0.2060	0.1278	0.0234	0.1011
가 구 주	0.4094	0.0935	0.3834**	0.1646	0.3006**	0.1167
가구소득(없음)						
50만 원 미만	0.2571	0.1841	0.3940	0.2564	0.0668	0.2719
50만~100만 원 미만	0.6835***	0.1251	0.9128***	0.1848	0.5014***	0.1728
100만~200만 원 미만	0.9248***	0.1191	1.1830***	0.1763	0.6240***	0.1635
200만 원 이상	1.2375***	0.1289	1.4050***	0.1977	0.9208***	0.1739
월평균 취업알선횟수			0.9312***	0.1114		
학력(중졸 이하)						
고졸	-0.1245	0.0993	-0.1526	0.1559	-0.1193	0.1316
전문대졸	0.0695	0.1248	0.1019	0.1946	0.0378	0.1643
대졸	-0.0530	0.1105	-0.2001	0.1689	-0.0707	0.1504
대학원졸	-0.0601	0.2724	-0.5517	0.5260	0.0472	0.3278
월평균 취업제외횟수	0.0546***	0.0089	0.6655***	0.0715	0.0455***	0.0111
부양가족 있음	-0.1017	0.1007	-0.2421	0.1745	-0.0640	0.1241
N	1,992		998		994	
-2log-likelihood	1711.020		6188.721		9268.064	
모델유의도	0.000		0.000		0.000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12명이며, 상정한 변수들의 결측치로 인해 관찰치가 1,992명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1).

업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비수급자의 경우 모두 본인의 지속적인 구직활동노력이 재

취업을 앞당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재취업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유길상 외(2003, 108~111)에 의하면 2001년 현재 한국의 직업안정기관에서 상담원의 권유에 의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20대의 청년층과 남성에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과 여성들은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장기실업의 확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개별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고용서비스 제공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2003년부터 실업자를 재취업의 곤란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차별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기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발전으로 판단된다.

## VI.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

### 1. 재취업의 질에 대한 평가지표

재취업의 질(quality)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임금과 재취업된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재취업된 일자리의 임금이 높으면 재취업으로 인해 취업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황덕순(2000)과 Decker(1997)의 연구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재취업의 질을 평가하였다.

한편,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재취업된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이나 본인의 적성 및 전공과의 부합성, 직장만족도, 새로운 직장의 발전가능성 등도 재취업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는 재취업의 질과 관련하여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직장만족도에 대해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고, 재취업된 이후의 재실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임금, 고용안정성, 직

장만족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취업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 2.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

황덕순(2000)은 한국에서 1998년 1/4분기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이직 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하락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임금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었다는 것을 밝혔다. 유길상 외(2003)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0년 1/4분기 이직자의 경우 이직 후 재취업시 임금이 하락하였지만 비수급자는 임금이 다소 상승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 두 연구 모두 임금의 평균적인 변화만을 살펴보았을 뿐 통계적인 검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도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시 임금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6>에 나와 있다. <표 6>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직 당시 임금에 비하여 재취업시 임금이 하락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시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표 6>은 이직 전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일수록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기간이 길수록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이 이직 당시 임금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실업 후 재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계층, 저학력자, 중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이직 당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취약계층들이 실업으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향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월평균 취업알선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취업제의를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이 높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의 임금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시의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재취업시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수준
상 수 항	2.4451***	0.1561	0.0000
실업급여 수급자	-0.0130	0.0313	0.6769
여 성	-0.1742***	0.0356	0.0000
연 령	0.0034**	0.0016	0.0294
이직 전 임금(로그)	0.5028***	0.0292	0.0000
학력(중졸 이하)			
고졸	0.0472	0.0416	0.2567
전문대졸	0.0881*	0.0528	0.0953
대졸	0.1570***	0.0466	0.0008
대학원 이상	0.2105*	0.1136	0.0640
사업장규모(30인 미만)			
30~99인	-0.0304	0.0314	0.3322
100~299인	-0.0018	0.0377	0.9611
300~999인	0.0128	0.0461	0.7812
1,000인 이상	-0.0639	0.0420	0.1280
가 구 주	0.1336***	0.0370	0.0003
이직 전 정규직	0.0281	0.0315	0.3717
이직 전 재취업 준비	0.0870***	0.0289	0.0027
근속기간(월)	0.0004	0.0002	0.1221
부양가족수	-0.0699*	0.0405	0.0844
가구소득(없음)			
50만 원 미만	-0.2529***	0.0806	0.0017
50만~100만 원 미만	-0.2251***	0.0540	0.0000
100만~200만 원 미만	-0.0840*	0.0503	0.0951
200만 원 이상	0.1001*	0.0539	0.0636
지속적 구직활동함	0.0242	0.0351	0.4900
월평균 취업알선횟수	0.0018	0.0424	0.9664
구직활동기간	-0.0099***	0.0036	0.0058
월평균 취업제외횟수	0.0025	0.0076	0.7452
<i>N</i>	1,204명		
<i>R</i> -square	0.485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실태조사 표본(N=2,012) 중 재취업 경험자는 1,275명으로, 이 중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임금정보가 있는 경우만을 상정하여 관찰치는 1,204명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1).



### 3.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이직 후 재취업된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성 정도를 재취업된 직장에서 조사시점 현재까지 재실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해서 로짓분석을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표 7>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재취업된 직장에서 다시 실업하는 경향이 낮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적성, 경력, 기술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을 높여 줌으로써, 적성과 기술수준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용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비수급자에 비하여 재실업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준비 없이 실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고용서비스의 선진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7>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재취업된 곳에서의 고용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가구주는 비가구주에 비하여 고용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학력, 사업장규모, 이직 전 임금, 이직 전의 정규직 유무, 근속기간 등은 고용안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실업의 위험이 낮아 저소득층의 고용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해 준비를 한 사람과 지속적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된 직장에서 재실업의 가능성이 낮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4.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도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는 임금, 고용안정성, 업무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인사고과의 공정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후생의 아홉 가지 측면에서 재취업한 직장의 만족도를 5점척도로 조사하였다. 아홉 가지 측면의 만족도 점수의 합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취업한 직장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표 7〉 재취업자의 재실업 가능성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수준
실업급여 수급자	-0.3028	0.1901	0.1112
여 성	0.7094***	0.2211	0.0013
연 령	0.0130	0.0111	0.2421
학력(기준: 중졸 이하)			
고졸	-0.1271	0.2667	0.6337
전문대졸	-0.0604	0.3402	0.8590
대졸	-0.1684	0.3059	0.5820
대학원졸	-1.4586	1.2713	0.2513
사업장규모(기준: 30인 미만)			
30~99인	0.3055	0.2026	0.1315
100~299인	0.0723	0.2474	0.7700
300~499인	-0.2902	0.4599	0.5280
500~999인	0.2999	0.5535	0.5879
1,000인 이상	-0.1293	0.6370	0.8392
근속기간	-0.0010	0.0018	0.5785
이직 전 재취업 준비	-0.2392	0.1960	0.2222
이직 전 임금(로그)	0.2541	0.1931	0.1882
지속적 구직활동함	-0.1883	0.2097	0.3692
퇴직금 수령함	-0.3141*	0.1712	0.0666
가 구 주	-0.6817***	0.2426	0.0050
배우자 수입 있음	-0.2292	0.2119	0.2792
부양가족 있음	0.0935	0.2529	0.7115
가구소득(기준: 없음)			
50만 원 미만	-1.1799***	0.4004	0.0032
50만~100만 원 미만	-2.7682***	0.3037	0.0000
100만~200만 원 미만	-2.9864***	0.2852	0.0000
200만 원 이상	-3.5351***	0.3266	0.0000
상 수 항	0.3319	1.0399	0.7496
-2log-likelihood	1061.125		
R-square	0.247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인 재취업 경험자는 1,275명이며, 결측치를 제외한 1,27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1).

<표 8> 이직 후 재취업된 직장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수준
실업급여 수급	-0.0928	0.4444	0.8345
여 성	0.4068	0.5432	0.4541
연 령	-0.0404	0.0246	0.1012
학 력			
고졸	1.2203*	0.6334	0.0544
전문대졸	0.9969	0.7844	0.2041
대졸	3.1437***	0.7195	0.0000
대학원 이상	3.8463**	1.6722	0.0217
사업장규모(30인 미만)			
30~99인	-0.6935	0.4731	0.1430
100~299인	0.1620	0.5704	0.7765
300~999인	-0.4717	0.6941	0.4969
1,000인 이상	-0.6163	0.6245	0.3239
이직 전 임금(로그)	-0.8759*	0.4495	0.0517
정 규 직	1.1380**	0.4737	0.0165
이직 전 재취업 준비했음	1.0868**	0.4287	0.0114
가 구 주	0.0396	0.5811	0.9456
근속기간(월)	0.0092**	0.0038	0.0158
퇴직금 수령함	0.7225*	0.3972	0.0692
부양가족 있음	1.4876**	0.6297	0.0184
가구소득(없음)			
50만 원 미만	-4.6484**	1.9276	0.0161
50~100만 원 미만	-3.2952**	1.3941	0.0183
100~200만 원 미만	-1.9217	1.3691	0.1608
200만 원 이상	-1.0066	1.4018	0.4729
지속적 구직활동함	0.7199	0.5211	0.1675
취업알선 경험 있음	-0.4239	0.6169	0.4923
배우자 수입 있음	-0.9963*	0.5097	0.0509
상 수 향	31.0235***	2.6258	0.0000
R-square		0.151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본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은 2001년 9월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중인 87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3) 취업알선 경험은 취업알선횟수÷구직기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8〉이다. 〈표 8〉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이 직장만족도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 또한 이직 전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된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낮았고, 배우자 수입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된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낮았다. 정규직, 이직 전 재취업 준비를 한 사람,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의 재취업된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성, 연령, 취업알선 경험 등은 재취업된 직장에서의 직장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VII. 결 론

본 논문에서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 우리 나라에서도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실업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본인 스스로 지속적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실업기간을 단축시키는 첩경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서비스 자체는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유길상 외, 2003), 본 논문에서 월평균 취업알선횟수를 독립변수로 검정한 바에 의하면 월평균 취업알선횟수가 많을수록 재취업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취업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노동시장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면, 재취업률을 높이고 실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임금, 고용안정성, 직장만족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직 전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

람보다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실업기간이 길수록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이 이직 당시 임금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실업 후 재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계층, 저학력자, 여성, 장기실업자, 이직 당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취약계층들이 실업으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향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00년 4~6월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 조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실업급여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재검토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실업급여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업알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시장 인프라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일중·최공필,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4.
- 류기철, 「실업급여 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경제학연구』 제47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9, 71~97.
- 유길상·김복순·성재민,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3.2.
- 유길상·이철수,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1996.1.
- 유길상·홍성호,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3.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11.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2003 가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황덕순, 「실업급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

- 향』,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0. 12.
- 홍성우·양채열,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9, 1~29.
- 일본 후생노동성, 『실업급여 수급자관련 통계』(내부자료), 2002.
- Atkinson, Anthony B. and John Micklewright,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9, No. 4, Dec. 1991, 1679~1727.
- Burgess, Paul L. and Jerry L. Kingston, “UI Benefit Effects on Compensated Un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Vol. 20, 1981.
- Decker, Paul T., “Work Incentive and Disincentives,”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Analysis of Policy Issues*, ed. by Christopher J. O’Leary and Stephen A. Wandner), 1997, 285~320.
-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 Smith, *Modern Labou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3rd ed., 1988.
- Feldstein, Martin, “The Economics of the New Unemployment,” *The Public Interest*, Vol. 33, Fall 1973.
- Haber, William and Merrill G. Murray,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An Historical Review and Analysis*, 1966.
- Katz, Lawrence and Bruce Meyer, “The Impact of the Potenti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1, 1990, 45~72.
- Lancaster, Tony and Stephen Nickell, “The Analysis of Re-Employment Probabilities for the Unemployed,” *Journal of Royal Statistics Society*, Part 2, Vol. 143, 1980, 141~152.
- Moffitt, Robert and Walter Nicholson, “The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on Unemployment: The Case of Federal Supplemental Benefi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4, 1982, 1~11.
- Mortensen, Dale, “Unemployment Insurance and Job Search Decision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0, 1977, 505~517.

[Abstract]

## The Effects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Reemployment

Kil-Sang Yoo

This paper shows that, in Korea, unemployment benefit (UB) prolongs unemployment spell significantly, but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reemployment.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the more important factor than UB on the unemployment spell and the quality of reemployment is active job search effort of the unemployed. Those who actively searched for new jobs and who received job placement services, both UB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have significantly shorter unemployment spell and better quality of jobs. Also low wage earners, low educated people, the long-term unemployed, females, aged people tend to suffer longer duration of unemployment, greater wage loss and lower stability of employment even after reemployment. This implies that target-specific public employment service toward more vulnerable target group will reduce social cost by helping them find earlier reemployment and better jobs.

**Keywords:** unemployment benefits, unemployment spell, quality of reemployment

**JEL Classification:** J6